

# 대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본 법인의 명칭은 대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 (사무소 소재지)**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(백천동) 대신대학교 내에 둔다

**제4조 (산학협력단 업무)** 산학협력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
7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**제5조 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**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부속기관 : 창업보육센터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인재개발원, 산학공동장비활동센터 등
2. 부설연구소 : 본 대학교 설치된 부설연구소
3. 기타 : 재정지원사업, 국책연구사업,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## 제2장 조직

**제6조 (이사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**제7조 (단장 등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겸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단장과 같다

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하부조직)**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행정부서 및 사업단(팀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부서 및 사업단(팀)에는 직원,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구성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 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 (운영위원회)**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3장 재산 및 회계

**제10조 (재산의 종류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설립시에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**제9조 (수입)**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이 제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 · 기부금 · 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5. 이자수입
6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사용료 수입
7.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익금

**제10조 (지출)** 산학협력단의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 · 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대학의 시설 · 운영에 지원비
4. 산학협력 관력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5. 수입에 기여한자에 대한 보상금
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

**제11조 (재산관리의 제한)** 산학협력단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**제11조의2 (회계관리)**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**제11조의3 (회계기관)**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② 단장은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.

**제12조 (회계연도)**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 제4장 보칙

**제13조 (비밀유지의무)** 이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 (정관의 변경)**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5조 (해산)**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신대학교에 귀속한다.

③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16조 (공고사항 및 방법)**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가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나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
다.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 공고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및 대신대학교 학보에 한다.

**제17조 (운영규정)**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2019년 6월 20일로 한다.

2. (경과조치) ①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②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.